##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80 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: 한준호·김남국·김민철

김병주 · 신현영 · 오영환

이용우 • 이원택 • 임오경

임호선 · 장철민 · 주철현

최혜영 · 홍성국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12조). 법률 제 호

##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「우편환법」의 적용) 우	제12조(「우편환법」의 적용)
편에 의한 추심금(推尋金)의 <u>지</u>	<u>지</u>
불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	<u>그</u>
는 이를 우편환금(郵便換金)으	
로 보고 「우편환법」을 적용	
한다.	